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2020. 10. 26. (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 1. 회부경위

- 제출자 : 권영숙 의원 외 5인
- 제출일 : 2020. 10. 20.
- 회부일 : 2020. 10. 20. (의안번호 : 20-145)

### 2. 제출이유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10. 15. ~ 2020. 10. 19.

2) 관계법령 : 붙임.

## 5.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본문 16개 조항과 1개의 부칙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실적의 평가,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공적인 있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2020년 9월말 기준 우리구 등록장애인수는 13,005명으로 이는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 373,508명의 3.48%에 해당합니다.(표1 참조)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5,463명으로 43.39%로 가장 많고, 이어 청각장애인 1,874명 14.41%, 시각장애인 1,473명 11.33% 순으로 파악 되었습니다.(표2 참조)
-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애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수혜대상과 지원계획 및 조성기준 등이 상당부분 유사한 바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요구되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마포구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급별 장애인 수	간	뇌병 변	뇌전 증	시각	신 장	심 장	안 면	언 어	자 폐 성 장 애	장 루. 요 루	정 신	지 적 장 애	지 체	청 각	호 흡 기
심한	4,921	6	863	11	345	453	21	5	49	200	22	499	858	1,081	461	47
심하지않은	8,084	77	527	24	1,128	168	10	6	68		97			4,562	1,413	4
계	13,005	83	1,390	35	1,473	621	31	11	117	200	119	499	858	5,643	1,874	51

[표2] 마포구 장애유형 등록 비율(%)

간	뇌병변	뇌전증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 성장 애	장루. 요루	정신	지적 장애	지체	청각	호흡기
0.64	10.69	0.27	11.33	4.78	0.24	0.08	0.90	1.54	0.92	3.84	6.60	43.39	14.41	0.39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